

# 그룹 행동 기준



**GLOBALLY COMMITTED  
TO COMPLIANCE**

# AGC그룹 CEO로부터의 메시지

AGC그룹행동기준의  
개정에 즈음하여

## AGC그룹 가족 여러분께

AGC그룹은 2008년에 각 지역 및 회사별로 존재하던 행동 기준을 통합하여 통일된 “AGC그룹 행동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행동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AGC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이 행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준법 경영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영 방침인 **Grow Beyond** 에서 정한 “2020년에 희망하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내용의 재구성과 함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 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읽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 행동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기준 준수는 AGC 그룹이 고객 및 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겹게 쌓아 올린 신뢰는 단 한번의 행동 기준 위반만으로도 한 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으며, 그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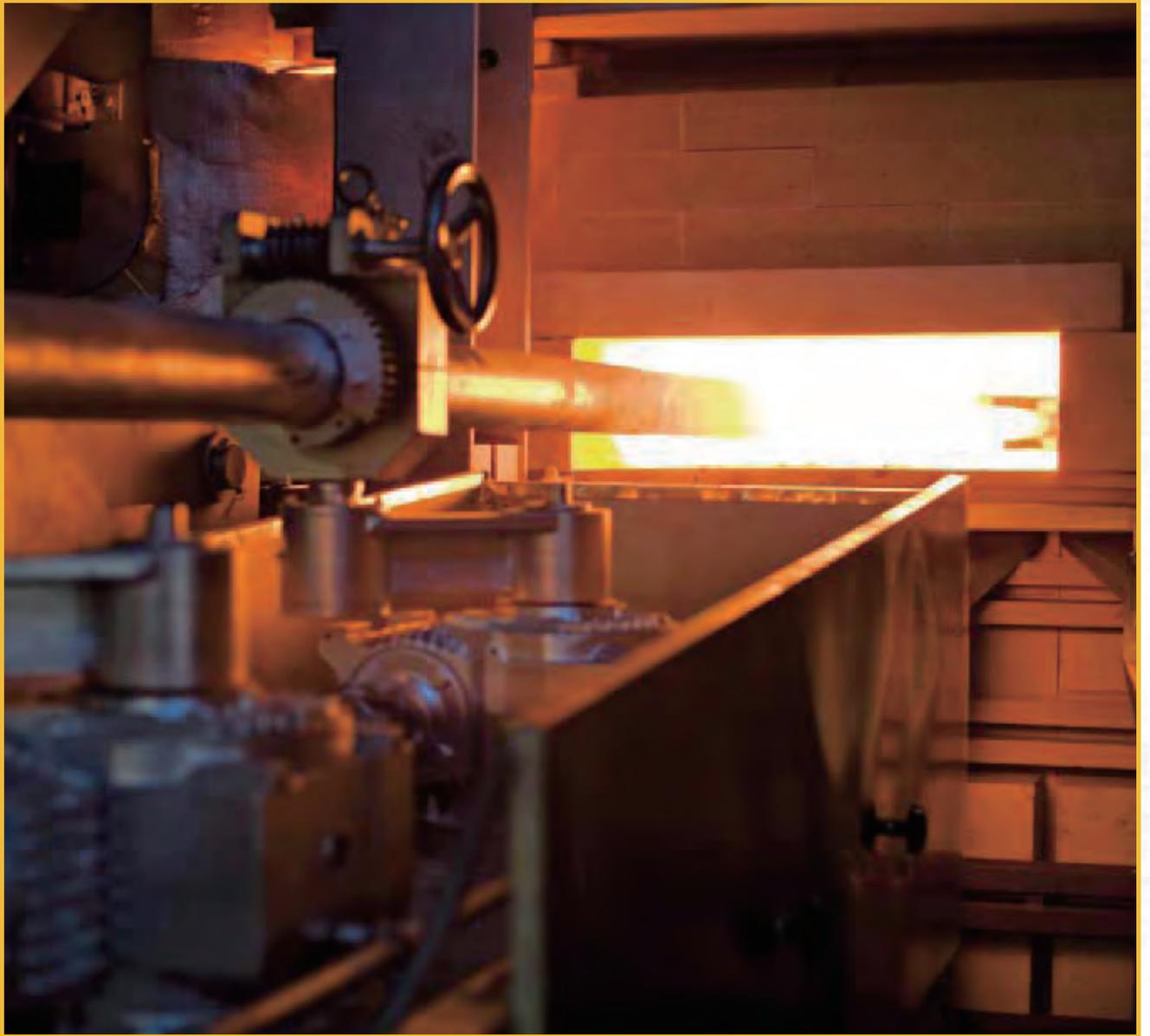
이는 AGC 그룹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법령 및 기업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곧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 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 마련된 행동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도록 합시다.

AGC그룹 CEO

컴플라이언스담당임원 이시무라 카즈히코

*K. Ishimura*



# 목 차

AGC그룹 CEO로부터의 메시지 .....	1
<b>들어가며</b> .....	4
AGC그룹 행동기준이란? .....	4
행동기준은 왜 필요한가? .....	4
행동기준을 지켜야 할 대상은?.....	5
이 책자를 받으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	5
AG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제는? .....	5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	6
상담 · 연락처는? .....	6
컴플라이언스상의 의심사례를 접수할 경우 대응은? .....	6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	6
본 책자에 대해 .....	7
<b>행동기준</b> .....	8
1. 컴플라이언스의 기반 .....	9
2. 공정한 거래와 독점금지법의 준수 .....	10
3. 노동안전위생 · 보안방재 .....	12
4. 환경 .....	14
5. 개인의 존중 .....	16
6.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 .....	18
7. 보고와 기록 .....	20
8. 내부자 거래 .....	22
9. 회사 및 타인 자산과 기밀정보 .....	24
10. 이익상반 .....	26
11. 접대 · 선물제공.....	28
12. 정치가 · 공무원 등의 관계 .....	30
13. 수출입관리 .....	32
<b>권말부록</b> .....	34
부록① 헬프라인(한국그룹 공통) .....	35
부록② 헬프라인 운용기준(한국그룹 공통) .....	36
부록③ 서약서 .....	37
부록④ AGC그룹 독점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	38
부록⑤ 「부정거래 등의 금지」 가이드라인(아시아) .....	41

# 들어가며

## AGC그룹 행동 기준이란?

AGC그룹 행동기준(이하, 행동 기준)은 업무 행위가 법령이나 회사 방침 및 규칙, 기업 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AGC그룹과 그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AGC그룹 비전 **“Look Beyond”** <우리의 가치관>의 ‘성실(integrity)’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 행동기준은 왜 필요한가?

AGC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행동의 기초로서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그룹 비전 **“Look Beyond”** 에 <우리의 가치관>을 정한 바 있습니다. ‘성실(integrity)’은 그 가치 중 하나입니다.

AGC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과 그 가족, 고객, 거래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사회(이하 총칭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확실히 부응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integrity)’을 침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integrity)’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회사 방침 및 규칙,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동 기준은 여러분이 “어떻게 법령 등을 준수하며 업무 활동을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성실(integrity)’에 입각한 업무 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그룹의 일원임에 긍지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AGC Group Vision **“Look Beyond”**



2012년 4월 개정

## 행동 기준을 지켜야 할 대상은?

AGC그룹은 통일된 행동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의 모든 회사와 그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AGC그룹은 거래처 여러분께도 동 기준을 존중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 책자를 받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먼저 본 책자를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만일 준법 경영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 책자를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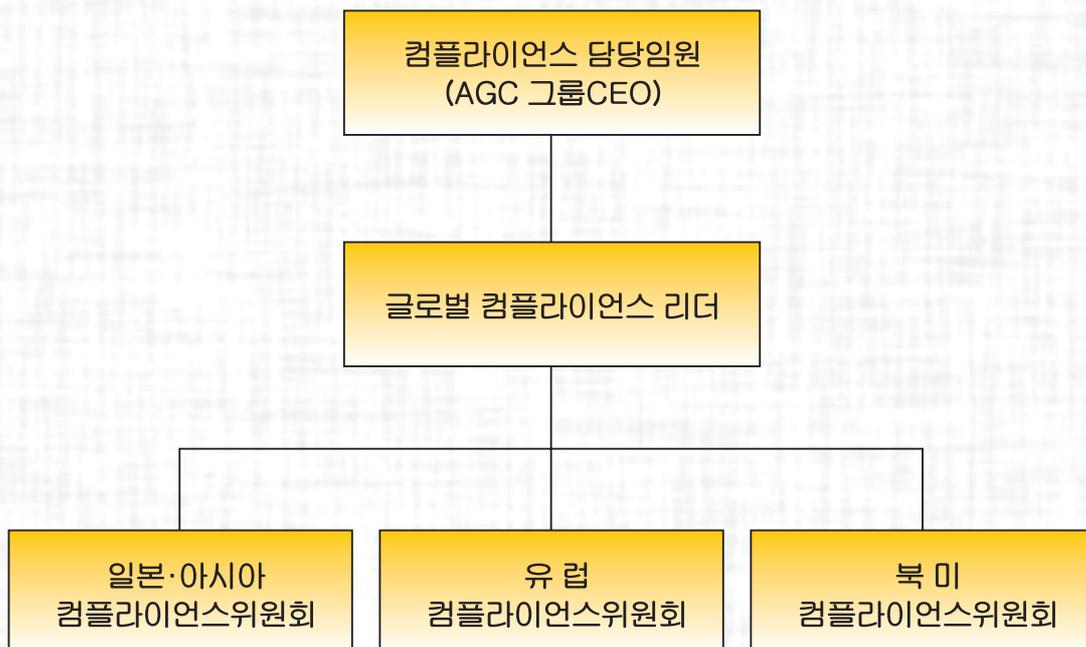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행동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행동 기준을 참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상사 혹은 컴플라이언스 창구(P. 6)으로 문의하십시오.
- \* 부정 행위 또는 부정 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연락 바랍니다.

본 책자에는 해설 및 Q&A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고 있으니, 판단에 참고 바랍니다.

## AG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제는?

AGC그룹의 CEO는 AG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임원 아래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리더를 두고, 준법 경영 시책의 기획입안·실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리더 아래에는 일본 및 아시아(이하, 일·아), 유럽, 북미 등 각 지역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AGC그룹 각 회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AGC그룹의 직원이 행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행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법령 및 회사 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연락처는 ?

행동 기준에 관한 상담 및 연락처는, 상사 및 아래의 컴플라이언스 창구(헬프라인 포함)입니다.

- \* 회사별 소관 부서 (컴플라이언스, 경리, 총무 · 노무, 안전 · 환경 · 품질, 구매 · 조달, IT 등)
- \* 회사별 헬프라인, 회사별 성희롱 등 상담원
- \* 한국 그룹 공통 헬프라인 (권말 부록 ①을 참조하십시오)
  - 각 사 컴플라이언스 사무국
  - 노무사사무소

상담 및 연락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명 접수도 가능합니다.

## 컴플라이언스상의 의심사례를 접수할 경우 대응은 ?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실명으로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법정 범위 내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 실명이든 익명이든 내용의 기밀성에 대해서도 가능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행동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하는 데 있어, 불이익이나 보복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성실하게” 보고한 사람, 혹은 조사에 협력한 사람에 대한 보복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감지한 우려를 진지하게 보고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보복 행위에 관여하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허위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Q&A

**Q.** 선배 직원이 행동 기준 위반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배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 어려워 상사에게 보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사가 선배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상대를 해줄지, 또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보고하십시오. 만약 상사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법 경영 창구로 연락하십시오. 오. 성실하게 보고하는 경우, 보고 내용이 실제로 행동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 한국공통기준

국제 공통 기준(글로벌 커먼, Global Common)은 글로벌 리더가, 또 국가 및 지역별 공통 기준은 지역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며, 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파견자는 파견 국가 및 지역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십시오.

단, 현지의 상관습상 인정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본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 국내법도 준수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및 수출관리관계 등).

### 책자에 대해

본책자는 국제공통기준인 <글로벌 커먼, Global Common>과 한국 국내용인 <한국공통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커먼 (국제공통기준)**  
전세계 AGC 그룹에서 공유하는 준수기준

**한국공통기준**  
글로벌 커먼의 보충 및 한국특유의 주의사항

Title

#### 2. 공정한 거래와 독점금지법의 준수

우리는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경쟁 관계 법령 및 "AGC그룹 독점금지법 준수 지침"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을 위해, 각국의 독점금지법(이하, 독금법, 경쟁법이라고도 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AGC그룹독점법 준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독금법 집행 및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엄격해지고 있으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뿐 아니라 금고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독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로 민사 소송에 제소되어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 업체(경쟁 사업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독금법 위반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경쟁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사 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 민일 경쟁 업체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AGC 그룹 독점법 준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합의를 경쟁 업체와 맺는 행위는, 서면 및 구두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협정 (가격 담합)  
\* 인형 담합  
\* 시장, 판매 지역, 판매처 등 판매 담합  
경쟁 업체에서 참가 항목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 경우에는,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상사 또는 법무 담당 부서로 보고하십시오.

독금법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왜곡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고객 및 거래처와 맺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부당한 끼워팔기 및 재판매 가격 강제, 특정 고객 및 거래처 배제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 ■ 한국공통기준

##### <독점법 준수 지침>

일본의 경우, 과징금 경면 제도 추진, 과징금 대폭 인상, 대상 행위 확대, 시효(제척기간) 5년으로 연장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분시효의 연장(기준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에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됨), 일부 과징금의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GC그룹 독점법 준수 지침"을 확실히 따르기 위해, "경쟁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외의 관계에 관한 지침(일본 및 아시아)"을 제정하였으며,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 바랍니다.

##### <독점법 보완법(특별법)>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면적율 또는 상시 고용 총인원 수 등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평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점법의 보완법(특별법)으로서 강제법규이므로, 설명 사전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동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도급 거래 및 물품의 보관·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청 대금의 지급지연(감액)?입명량요 등 금지, 주문서 등 서면 교부 등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또,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처 및 하도급 업체로의 발주를 일반적으로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우회적 저위의 남용으로, 독금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평화에 관한 법률(하청법)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AGC그룹 독점법 준수 지침(연말 부록③참조), 경쟁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지침(일본·아시아)(연말 부록④ 참조), 각 사 위주관리규정

#### Q&A

**Q.** 저는 영인 담당자입니다. 경쟁 업체 직원에게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제품의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 이는 제품의 구매에 관한 협상으로, 시장경쟁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상사와 미리 의논하지 않고 만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됩니다. "AGC그룹 독점법 준수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쟁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접촉 후에도 지침에 따라 내용을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업체와 접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A  
구체적 사례  
해설

주요관련 법령  
해당 항목에  
관련되는 법령

헬프라인  
우리가  
지향하는 방침

해설  
헤드라인의  
해설

AGC  
아사히글라스  
상담처  
소관부서

주요 관련규정·자료  
적용되는 그룹내  
방침·규정

# 행동기준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그 행동은... ?**

- \* Integrity【성실】에 부합하고 있는가?
- \*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 \* 고객, 거래처, 회사 등에서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 \* 보고도 못 본체 하고 있지는 않는가?

# 1. 컴플라이언스의 기반

우리는 법령 및 회사 방침·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사안에도 진지하게 임합니다.

이 항목은 모든 행동 기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에는 중요 준수 사항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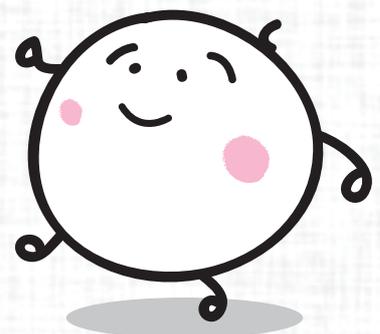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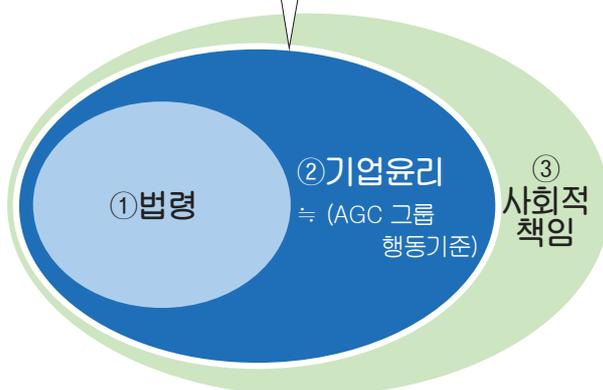
법령 및 회사 방침·규칙의 준수에 대한 우려 사항은, 상사 및 컴플라이언스 창구 (P. 6)로 연락 바랍니다.

## Q&A

Q.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만 잘 준수하면 문제 없을까요?

A. 아니요, 법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뿐 아니라 기업 윤리와 회사에서 정한 규정 등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법령 외에도 안전 관련 규칙이나 정보 보안 정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회사 자산의 적절한 이용과, 과도한 접대 및 선물 금지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AGC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범위



## 2. 공정한 거래와 독점금지법의 준수

우리는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경쟁 관계 법령 및 “AGC그룹 독점금지법 준수 지침”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을 위해, 각국의 독점금지법(이하,독금법.경쟁법이라고도 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세계 어디에서든 “AGC그룹독금법 준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독금법 집행 및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엄격해지고 있으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뿐 아니라 금고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독금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로 민사 소송에 제소되어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 업체(경쟁 사업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독금법 위반의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 경쟁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상사 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 \* 만일 경쟁 업체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AGC 그룹 독금법 준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합의를 경쟁 업체와 맺는 행위는, 서면 및 구두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격 협정 (가격 담합)
- \* 입찰 담합
- \* 시장, 판매 지역, 판매처 등 분배 담합

경쟁 업체에서 상기 항목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 경우에는,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상사 또는 법무 담당 부서로 보고하십시오.

독금법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왜곡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고객 및 거래처와 맺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부당한 끼워팔기 및 재판매 가격 강제, 특정 고객 및 거래처 배제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 ■ 한국공통기준

### <독금법 준수 지침>

일본의 경우, 과징금 감면 제도 추진, 과징금 대폭 인상, 대상 행위 확대, 시효(제척기간) 5년으로 연장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분시효의 연장(기존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에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됨), 일부 과징금의 상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보다 엄격하게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GC그룹 독금법 준수 지침”을 확실히 따르기 위해, “경쟁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지침(일본 및 아시아)”을 제정하였으니,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 바랍니다.

### <독금법 보완법(특별법)>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 등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독금법의 보완법(특별법)으로서 강행법규이므로, 설령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동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도급 거래 및 물품의 보관·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청 대금의 지급지연·감액·덤핑강요 등 금지, 주문서 등 서면 교부 등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또,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처 및 하도급 업체로의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독금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청법)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AGC그룹 독금법 준수 지침(권말 부록④참조), 경쟁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지침(일본·아시아)(권말 부록④ 참조), 각 사 외주관리규정

## Q&A

**Q.** 저는 영업 담당자입니다. 경쟁 업체의 직원에게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제품의 구입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품의 매매에 관한 협상으로, 시장경쟁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상사와 미리 의논하지 않고 만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됩니다. “AGC그룹 독금법 준수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쟁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접촉 후에도 지침에 따라 내용을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업체와 접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노동안전위생 · 보안방재

우리는 현장 근로자 및 내방객,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법령 및 회사 방침 · 규칙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GC그룹 비전 **“Look Beyond”** <우리의 가치관>의 하나인 ‘환경(environment)’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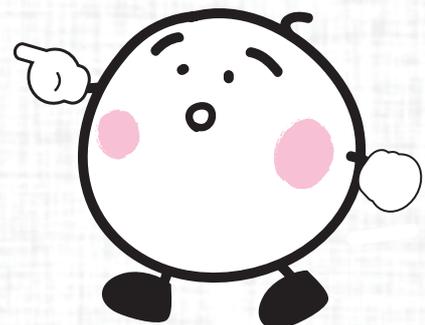
우리는 사업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GC그룹의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방침에 따라, 근로 환경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없이는 생산도 없다”는 생각이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 \* 재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라인 가동 중지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 \* 안전 표지를 따르고,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정해진 규칙을 지키십시오.
- \* 화학 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 \* 직장 내 음주 및 불법 약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회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류 및 불법 약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회사 방침 · 매뉴얼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만에 하나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 ■ 한국공통기준

### <재해·질병 예방>

안전 위생 관계 법령은 근로상 재해 및 질병의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 수칙 의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직원과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작업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의 사원은 동일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지휘 명령 계통 및 적용 법령이 상이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안전(노동 재해 방지)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 <음주 운전 금지>

AGC그룹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장시간 근로 억제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의 실제 노동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 시간을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및 풍토 만들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 재해 인정 판단 기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특정 직원의 장시간 근로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업무 배분에 주의하고, 인원 배치 및 육성 등을 계획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 재해 등의 위기 관리>

지진 등 자연 재해 및 신종 플루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요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각 거점의 지시 등에 근거하여, 평소에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직업안전법,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노동기준법, 국민건강증진법, 기타 노동안전위생/보안방재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AGC그룹노동안전위생 기본방침, AGC그룹 보안방재기본방침, 각 사 취업규칙, 각 사 BCP(Business Continue Plan)

## Q&A

**Q.** 동료규정을 무시한 채 전원을 끄지 않고 공장 내 설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감전이나 화재·폭발의 위험에 노출될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동료에게 주의를 주고, 동시에 상사 및 안전 담당 부서로 신속히 보고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취하십시오.

安全なくして  
生産なし

AGCグループ  
石料和産

“Look Beyond” AGC

## 4. 환경

우리는 환경에 관한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제품의 취급(수송·회수·폐기) 등 회사의 모든 업무 단계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GC그룹은 그룹 비전 **“Look Beyond”** <우리의 가치>의 하나로 ‘환경(environment)’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사업 확대로도 연결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는 각 공정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래처에도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친환경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 한국공통기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의 조례가 정부 기준을 상회하거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역과 맞은 협정(공해 방지 협정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AGC그룹 환경 기본 방침, AGC그룹 환경 관리 기본 요강, 통합 환경 관리 기본 규정(통합 환경 매뉴얼), AGC 그린 조달통합 지침, 토양·지하수 대책에 관한 지침

## Q&A

**Q.** 일반 가정에서는 3~4종류로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반면, 공장에서는 보다 많은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구분해야 하나요?

**A.** AGC그룹은 제로에미션(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각 공장 및 사업소별 폐기물 분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개인의 존중

우리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AGC그룹 비전 **“Look Beyond”** <우리의 가치>의 하나로 ‘다양성(diversity)’을 내걸고 있습니다.

AGC그룹은 직원의 능력에 맞는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별, 장애, 기타 법적 보호를 받는 속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희롱(괴롭힘)은 건전한 근로 환경을 저해하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구두 및 서면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그 내용의 성적 요소 포함 여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불문하고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도 이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AGC그룹의 각 회사는 직원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기밀정보로서 관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 인증 정보, 주소, 급여, 수당, 본인 및 가족의 건강과 개인적인 사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개인 정보를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사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사 및 컴플라이언스 창구(p. 6)로 상담 바랍니다.



## ■ 한국공통기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화문제를 비롯한 각종 차별 및 인권 침해를 배제하여, 밝고 보람찬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 가해자 개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괴롭힘으로 성희롱을 들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뿐 아니라, 구시대적인 남녀 역할 분담 의식이 담긴 발언 등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 관계 등 직장 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며, 기업이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나 지속적인 명예 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언동은 적절한 지도라 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피도록 합시다.
- 상대방의 언동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십시오.
-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사 및 컴플라이언스 창구(p. 6)로 상담 바랍니다. 신속한 상담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합니다.

부적절한 언동이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발견한 제3자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형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회사별 취업 규칙

## Q&A

**Q.** 사내 회식자리에서 “결혼은 안 하느냐”고 집요하게 묻는 통에 요즘은 회식자리가 괴롭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이런 괴롭힘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A.** 성희롱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은 언제 하나?”, “아이는 언제 낳나?”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물어 고통을 준다면,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신속히 상사 및 컴플라이언스 창구로 상담 바랍니다.



## 6.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

우리는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합니다.

우리는 품질 분석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AGC그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는 안전해야 하며, 법령 및 사내 규격, 고객과 합의한 사양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 제품 수명 주기 내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경고 표시 등을 이용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 등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객 등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한국공통기준

### <제품 및 품질 데이터>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법령 및 사양을 규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그 규정을 철저히 주지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검사를 생략하여 신뢰를 잃으면, 해당 제품 및 관계 부서뿐 아니라 AGC그룹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제품 및 품질 데이터의 조작 등은 절대로 금하여 주십시오.

### <제품 안전>

제조물책임법(PL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결함의 존재만을 요건으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최종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판매한 중간 제품 및 원료의 결함까지도 포함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는 제품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을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광고>

한국법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 기만적 내용 / 부당한 비교 / 비방적 표시·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 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활동시, 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 주요 관련 법령

제조물책임법(PL법), 소비자기본법(소비자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교통법, 한국공업표준규격(KS)을 포함한 국가별 규격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AGC그룹 품질 경영 기본 요강, 위기 관리 매뉴얼

## Q&A

**Q.** 저는 최근에 입사했습니다. 동료 가 사양서에 기재된 품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주의를 주어도 좋을지 모르겠고, 또 동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먼저, 상사에게 그와 같은 우려 사항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품질 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보고는 회사의 가치와 명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성실한 보고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자재가 배송 문제로 물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이를 알렸더니, 계약으로 지정한 부자재 대신 품질이 거의 동등한 다른 부자재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디. 납기를 지연하느니,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A.** 아니요. 상사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고객의 양해를 얻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양해를 얻었다면, 상사의 제안대로 대응해도 좋습니다. 양해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므로, 상사의 제안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 7. 보고와 기록

우리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성실하게 기록·보고·공개합니다.

우리는 재무·회계·세무에 관한 법령 및 회사 방침·규칙을 준수합니다.

회사가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모든 이해관계자 및 사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개시하기 위해서는 상사 등에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령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데이터 및 기록을 조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 불편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직만이 최선”입니다.

재무 및 회계, 세무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회계 기록을 작성·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GC그룹이 공개 의무를 다하고, 업무 수행상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재고 관리, 매출 계상 등의 실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회사 및 부서별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 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 법령 및 회사 규칙을 위반하고 재무·회계 및 기타 기록을 폐기·삭제·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재무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이를 공표해서는 안됩니다.

조작이라 함은, 실체가 없는 매입·매출·재고·비용 등을 계상하는 등, 허위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거나, 비용·수익의 계상 시간을 변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감사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내외 감사 담당자에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공통기준

### <신청 및 정산>

각종 신청 및 경비 정산은, 규정에 따라 실태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그날 그날 신청하고, 출장 경비나 개인 입체는 발생 후 즉시(늦어도 1개월 이내에) 정산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기억이 흐려져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하거나, 승인 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 정산 등의 승인 시에 의문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거래 기록>

거래 기록 및 장표류 작성 시, AGC그룹 회계 방침, “부정 거래 등 금지” 가이드라인(아시아)을 준수함과 동시에, 회사법·세법 등에 유의하십시오.

### ● 주요 관련 법령

회사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제회계기준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회사별 취업 규칙, AGC그룹 회계 방침 “부정 거래 등 금지” 지침(권말 부록 ⑤참조)

## Q&A

**Q.** 건설공사 수익 관리상, X 공사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동시에 진행 중인 Y 공사에서는 예상보다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공사 물건에서 수지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 X 공사 원가의 일부를 Y 공사 원가로 돌려, X 공사·Y 공사 모두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정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당기 손익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공사 물 건별 채산을 왜곡하는 행위로, 설명 회사 전체의 손익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산 관리를 포함해 향후 업무상 판단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공사 물건별로 수익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X 공사·Y 공사 각 물건별 실적 원가를 정확하게 계상하고, 물건별 거래 실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8. 내부자 거래

우리는 AGC그룹 및 타사의 증권을 거래할 때,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AGC그룹 및 타사의 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제안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가르쳐 주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GC그룹 가운데에는 아사히 글라스 주식회사를 비롯해 주식을 상장한 회사가 있으므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 업무를 통해 다른 상장회사(고객사 및 거래처 등)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중요한 미공개 내부 정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 \* 재무 정보
- \*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
- \* 타사와의 합병, 인수, 사업 양도, 또는 신사업 발족에 관한 정보

내부자 거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개인이나 회사는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홍보·IR 담당 부서 또는 컴플라이언스 창구(p. 6)로 상담 바랍니다.



## ■ 한국공통기준

한국에서도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식 등의 매매시에는 내부자 거래가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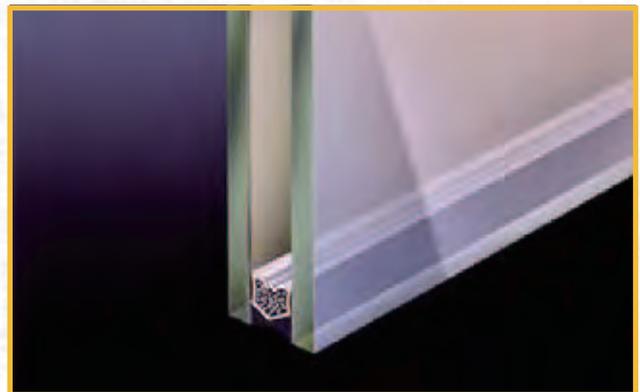
### ● 주요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Q&A

**Q.** 상장사인 X사를 담당하게 되어, 해당회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기 위해 X사의 주식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X사를 방문했을 때, “아직은 비밀이지만, 우리 회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기업 인수를 실시할 예정인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내용을 그쪽 담당자가 귀뜸해 주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X사의 주식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이전부터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해도, X사의 중요 미공개 정보(내부자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X사의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X사의 주식 등을 매매해서는 안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사 또는 각 사 컴플라이언스 창구로 상담 바랍니다.



## 9. 회사 및 타인의 자산과 기밀정보

우리는 유형·무형의 회사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사용·보호합니다.

우리는 기밀 정보 및 지적 재산이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밀 정보 및 지적 재산을 존중합니다

우리에게는 회사의 자산을 보전(관리·사용·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에는 토지·건물·기계·설비·재고, 컴퓨터, 현금과 같은 유형 자산과, 기밀정보·특허·상표·저작권·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적절히 보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의 미미한 사적 사용 등, 회사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정보의 무단 공개 또는 누설은 회사나 거래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퇴직 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또,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문서, 기타 정보 매체가 도난 또는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레스토랑, 화장실, 전차, 비행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기밀 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금하여 주십시오.

소셜 미디어, 블로그, 포럼 등을 이용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매체에 한 번 게재된 메시지는 재전송되어 반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회사나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회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인 회사 자산의 이용에 대해 조사·제한·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 자산의 보전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공개·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 입사 전 근무처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AGC그룹 회사 및 타인에게 무단으로 공개해서도 안됩니다.

## ■ 한국공통기준

### <기밀 정보>

기밀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정책”상의 “Confidential”이상의 관리(기밀 표시, 보관 장소의 잠금 장치, 접근 제어 등의 관리 등)가 필요합니다. 규정 정비와 더불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적 재산>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형성된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연구, 기술 개발 활동으로 발명한 것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담당 부서로 신청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GC”의 이름이나 로고는 AGC 브랜드 적용 회사<sup>注)</sup>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신문·잡지 등을 복사(스캔)하는 행위나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변경·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신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sup>注)</sup>그룹 브랜드 관리 규정에서 정한 적용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은 회사

### ● 주요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 ● 주요 관련 규정 및 자료

회사별 취업 규칙, 회사별 정보 보안 정책 지침, 회사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지침, 그룹 브랜드 관리 규정

### ● 담당처

각 사 IT·Security부서

## Q&A

**Q.** 퇴직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시 담당했던 제안서의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제안서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제안서 형식만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복사본을 보내도 될까요?

**A.** 아니요, 안됩니다. 그 제안서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또, 비록 재직 당시 자료 작성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엄연한 외부인이므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10. 이익상반

우리는 고객 및 거래처, 공무원, 협력 회사, 경쟁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자신 및 친족, 친구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익상반은 자기·친척·지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목적이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기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AGC 그룹의 경쟁타사 및 고객처, 고객의 임원이나 고문 등, 거래관계에 영향력을 가진 직위에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사전에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익상반이 발생하거나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사 또는 컴플라이언스 창구(P.6)로 신속히 연락바랍니다.

이익상반 또는 이익상반이 우려되는 예:

- \* 자기·친척·지인 개인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개시하는 것
-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비즈니스 찬스를, 자기·거래처·경쟁타사·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 \* 결과적으로 자기·친척·지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처·제3자와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



## ■ 한국공통기준

이익상반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별 취업규칙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 임원이 자신 및 친척과의 거래 등, 이익상반 행위 및 회사와 경쟁하는 거래(경쟁업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등 엄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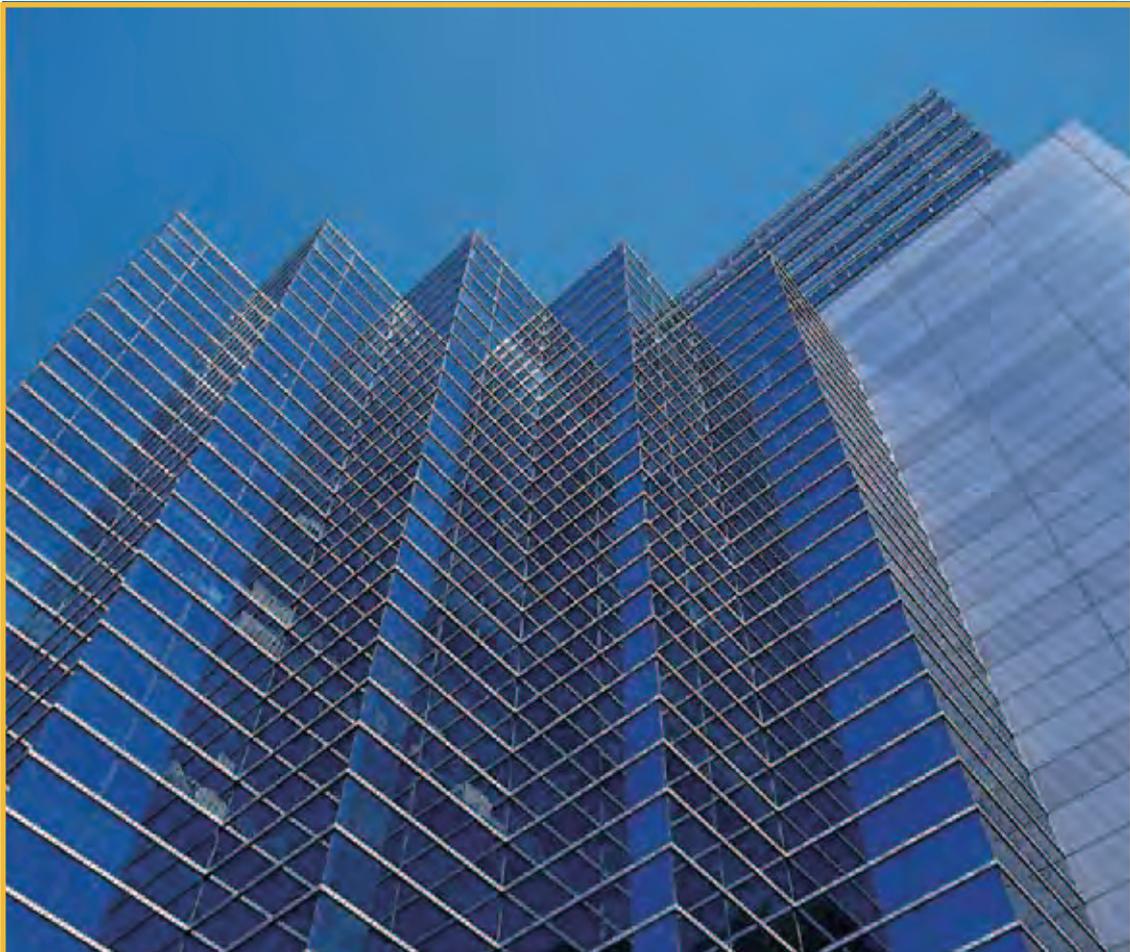
## ● 주요 관련 법령

회사법, 형법

## Q&A

**Q.** 소속 부서에서 제품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제 삼촌이 인쇄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삼촌의 회사를 포함하여 비교견적을 받았습니 다. 그 결과, 삼촌의 회사가 다른 업체보 다 다소 높은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 나 삼촌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삼 촌 회사에 주문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까요?

**A.**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문제 가 됩니다. 이익상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 담당 부서로 상담 바랍니다.



## 11. 접대 및 선물

우리는 부적절한 접대 및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 및 기타 개인 편의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 및 거래처 등의 접대 및 선물에 관한 방침을 존중합니다.

접대 및 선물을 할 때에는 냉철한 판단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접대 및 선물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왜곡하고 거래의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무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접대 및 선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접대 및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십시오.(극히 소액의 선물 등은 제외) 상식의 범위 내에서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점심 식사 정도의 접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회사차원에서 접대 및 선물을 하는 경우에도 지나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접대 및 선물에 관한 방침 등을 알려준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접대 및 선물을 불법적인 상업 뇌물로 지정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 한국공통기준

접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사·각 부서의 규정을 준수 하십시오. 접대 및 선물이 많은 부서에는 기준 금액 설정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관점에서 하기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위법은 아닌지
-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지
- 필요성 및 금액·내용의 타당성이 고려되었는지
-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고할 것

접대·선물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 과도한 접대·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래처 등에 설명할 것
- 거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상사 등에 보고할 것

상사 등에 보고할 수 없는 접대 및 선물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Q&A

**Q.** 현재 X사와 Y사에서 동일한 부자재를 같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서비스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자재의 향후 공급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 결과, Y사에서는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제시한 반면, X사로부터는 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X사에서 골프, 회식과 같은 접대를 받아 신세를 진 기분이 들어, X사에 대한 발주 비율을 유지해주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 접대 및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급업체 선정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2. 정치인 · 공무원 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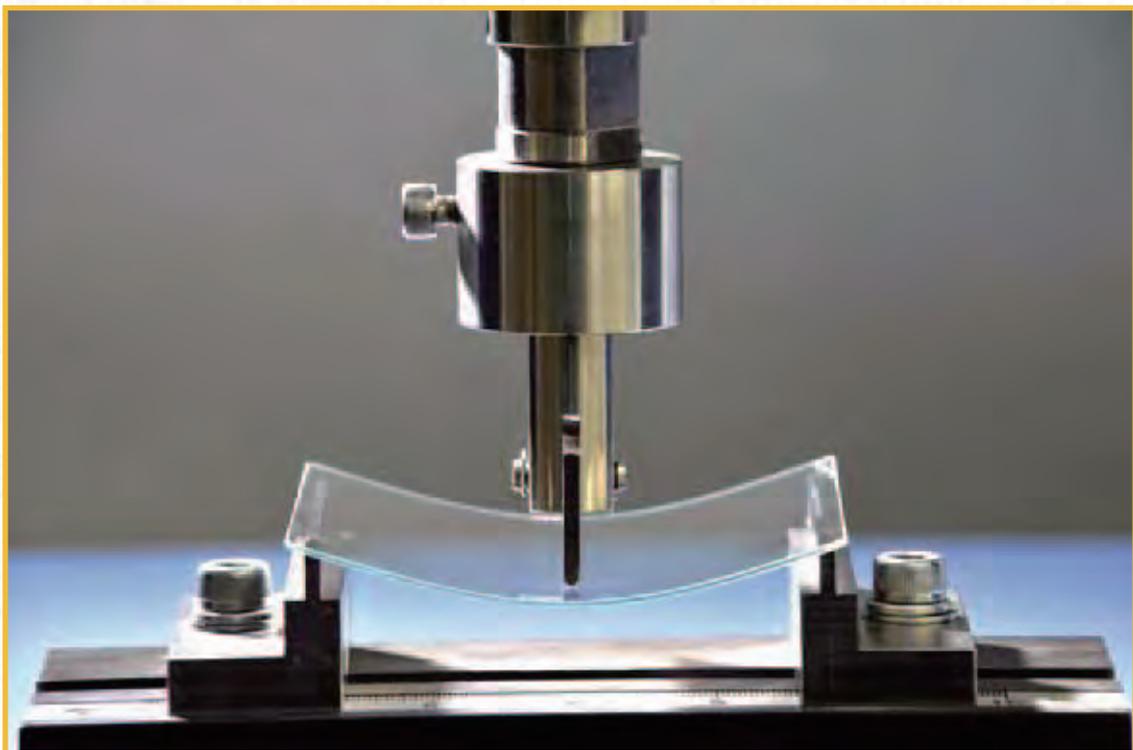
우리는 정치인 및 정치 단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현금 및 기타 증여를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겠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AGC그룹은 그 어떤 뇌물 증여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뇌물 증여 행위란, 상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 혹은 유형·무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뇌물 증여 행위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금품 증여, 수수료 부풀리기, 허위 고문 계약 체결, 리베이트·정치현금·자선현금 지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주 등의 사례로 되돌려주는 “킱백(kickback)”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뇌물 증여 행위는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뇌물 수수 방지 및 정치 활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전에 상사 또는 컴플라이언스 창구(p. 6)로 문의 바랍니다.



## ■ 한국공통기준

### < 업무촉진비용 지불(facilitation payment) >

업무촉진비용 지불(facilitation payment)이란, 인허가 등의 형식적인 행정 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소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형식적인 행정에는,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거나 거래를 계속하도록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은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AGC그룹은 업무 촉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등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촉진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필요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 시에는 그 필요성을 그때마다 확인 바랍니다. 모든 지불 내역은 장부에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 정치헌금 · 활동 >

기업이 정치 헌금을 납입하는 경우, 정치자금규정법에 의해 그 대상은 정당 및 정치 자금 단체로 한정되며, 그 내용 또한 엄격히 제한됩니다.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정치인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경우, 특히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또, 정치 신조는 본래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뜻에 반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의원으로 입후보하거나 특정 정당 및 개인을 지지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이 경우, 회사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형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 Q&A

**Q.** 저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습이 있는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 공무원 개인에게 현금을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안됩니다. 그 나라에 그러한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AGC그룹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비즈니스 기회를 잃는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뇌물이나 부정한 금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을 전달한 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상사 또는 컴플라이언스 창구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 13. 수출입관리

우리는 수출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제품·서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원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거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관련 법령은 제품 뿐 아니라 기술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국적이 다른 사람에게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반입할 때에도 각종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신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품 및 기술 정보의 수출입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십시오. 궁금한 점은 상사 또는 컴플라이언스 창구(p. 6)로 문의 바랍니다.



## ■ 한국공통기준

### <수출 관리>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무기로 사용·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이 무단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외환법에 의거하여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 반하는 화물 및 기술의 무단 수출은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일정 기간 내 수출 및 기술 제공 일체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는 회사에서는 수출 시 봐야 할 절차 등을 정한 안전보장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 및 확인 등을 수행하여 주십시오.

수출 규제(수출 허가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화물 및 기술의 수출 ⇒ 수출 허가 필요
  - 상기 이외의 화물 및 기술의 수출 ⇒ 용도 및 수요자에 따라서는 수출 허가가 필요
- ※ 일반 제품 출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출장 시 화물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 무상 샘플 제공
  - 전자 메일을 이용한 기술 자료 송부
  -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기술지도 등
- ⇒ 수출 및 기술 제공 시마다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주요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무역관련법령

### ● 주요 관련 규정·자료

각 사 안전보장수출관리규정

## Q&A

**Q.** 고객과, 자사의 첨단 소재 수출 계약을 협상 중입니다. 최근 해당 첨단 소재가 군용 무인 항공기의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협상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안됩니다. 수출품이 병기로 사용·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사전에 알고도 해결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수출 규제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 수출 관리 담당 부서로 상담 바랍니다.

# 권말부록

부록① 헬프라인(한국그룹공통)

■ 한국 그룹 공통 헬프라인

【사외노무사(김정수 공인노무사사무소)】

- ①전화 : 054-457-7868 ~ 9
- ②Fax : 054-457-0149
- ③E-mail : kjsnomusa@hanmail.net
- ④우편 : 우)730-915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 (2F)

■ 각 사 헬프라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 ①전화 : 054-478-0558
- ②Fax : 054-478-0576
- ③E-mail : helpline@afk.agc.com
- ④우편 : 우)730-853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헬프라인 담당자

【AGC디스플레이글라스 오창㈜】

- ①전화 : 043-240-5901
- ②Fax : 043-240-5599
- ③E-mail : helpline@ado.agc.com
- ④우편 :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로105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헬프라인 담당자

【한옥테크노글라스㈜】

- ①전화 : 054-475-1111
- ②Fax : 054-476-7811
- ③E-mail : helpline@htg.agc.com
- ④우편 : 우)730-410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33(금전동)  
한옥테크노글라스㈜ 헬프라인 담당자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 ①전화 : 054-478-0558
- ②Fax : 054-478-0576
- ③E-mail : helpline@pgk.agc.com
- ④우편 : 우)730-853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헬프라인 담당자

## 부록② 헬프라인 운용기준(한국그룹공통)

### 1. 이용 대상자

AGC그룹 임직원 및 AGC그룹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분(협력 업체 등의 직원, 인재 파견 회사에서 AGC 그룹으로 파견된 직원)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상담 및 연락처

- 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
  - ② 노무사사무소(김정수 공인노무사사무소)
- 노무사사무소로 상담을 의뢰할 때에는 “AGC그룹 관계 상담”임을 밝히십시오.

### 3. 실명 상담 및 보고

실명이 아닌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상담 및 보고는 가능한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때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또, 상담 및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상담·보고한 분께는 접수 통지 및 조사 결과 등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4. 익명 상담 및 보고

익명 상담 및 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바랍니다.

특히 행동 기준 위반을 익명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①~④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 ① 위반 시기 및 빈도
- ② 관계 부서명 및 관계자 이름
- ③ 사실 관계(체험/소문의 구별 포함)
- ④ 문제점

### 5. 익명성 확보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익명성 보장을 위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단, 준법 경영 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름이 공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에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에게는 비공개로 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상담시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상담·보고자에 대한 처우

상담 및 보고를 이유로 감봉,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담 및 보고를 이유로 상담·보고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에 보복하는 행위는, 취업 규칙 등에 의거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헬프라인으로 연락하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행동기준 위반에 대해 연락 및 상담하는 경우는, 처분의 검토에 있어, 정상 참작합니다.

### 7. 상담 및 보고 내용

오로지 비방·중상이 목적인 신고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통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보고 내용은 행동 기준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므로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예컨대,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법률 상담(유산 상속, 가정 및 이웃과의 문제 등)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부록③ 서약서

### 1. 제출 목적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준법 경영을 중시하는 풍토가 흐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단순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행동 기준을 다시 읽음
- 컴플라이언스라는 관점에서 각자 자신의 행동 및 직장 풍토를 재고함
- 컴플라이언스에 관해 직장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함
- 컴플라이언스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함

### 2. 제출 대상자

서약서 제출 대상자 전원은 정기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등 장기 부재자 제외)

제출 시, 서약할 수 없는 주요 이유(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준법 경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경우, 근무처에서 개선을 시작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아 서약을 해도 될지 고민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유기입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되며, 각 부문별 준법 경영 시책 점검 시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 3. 제출처

서약서의 제출처는, 사장으로 합니다.

휴직파견자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휴직파견자가 파견 전 회사에서 서약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자사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예문】

<u>사장 님</u>	<b>행동기준에 관한 서약서</b>
<p>· 저는, AGC 그룹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의 책자를 수령하여 읽었습니다. 저는, 행동기준의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p> <p>· 저는, 행동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p>	
____년 ____월 ____일	
부서 _____	
서명 _____	
자유기입란	
<p>주) 행동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입각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p>	

부록④ AGC그룹 독금법 준수 가이드라인

■ 독금법 준수 글로벌 지침 2005년 9월 1일 제정

1. 모든 경쟁사와의 회의(경쟁단체와의 회의도 포함. 이하 동일)는 그 목적의 적법성을 철저히 따지고, 가능한 제한해야 하며, 공식·비공식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업계 모임에서 탈퇴할 것.
2. 모든 경쟁사와의 회의에서는, 참가자에게 독금법 준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것.
3. 모든 경쟁사와의 회의는 사전에 상사에게 그 목적을 전달하고 승낙을 얻을 것.
4. 모든 경쟁사와의 회의는 그 내용을 문서 기록으로 남길 것.
5. 상기의 회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법무부 또는 변호사사무소 등의 검사를 받을 것.
6. 경쟁사에서 의심스러운 접근을 해온 경우, 반드시 상사 및 법무부문에 보고하여 조언을 받을 것.
7. 다른 직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거나 들은 경우, 상사 또는 법무부문, 준법 경영 부서 등으로 보고할 것.

■ 경쟁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지침(일본·아시아)

2005년 9월 1일제정 2011년 11월 1일개정

**경쟁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담합 및 입찰 담합, 또는 그 의심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참조> 행동기준 “공정 거래 - 독점금지법 준수”**

경쟁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독점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당연 위법)으로, 과징금 및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 거래 관계 및 협상 관계의 경우는 ① 참조)

- 가격(상품 가격 외에 공사, 수송, 정비, 출장 요금 등도 포함)에 관해 논의하는 행위.
- 사업자별 판매수량·출하수량·생산수량 및 그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 설비 가동 일수 및 가동을 제한, 설비 신설 및 증설 제한·금지, 신기술 채용 제한·금지 등에 관해 논의하는 행위.
- 입찰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행위.
- 고객 획득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시장 분할을 결정하는 행위.

또, 다음의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①, ⑤ 참조)

- 가격 및 판매 수량, 생산 수량, 설비 가동 등의 정보를 FAX나 전자 메일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 위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위

- ① 경쟁사업자와의 연락·회의 및 사업자단체 참여는 독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경쟁사업자와의 연락 및 회의

- (1) 경쟁사업자와의 연락이나 회의는, 자사와 경쟁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관계(제조 위탁, 판매 위탁, 합병, 기술 제휴 등)에 있거나 이러한 거래에 관한 협상 중에 있어, 해당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경우에도, 경쟁사업자와의 논의 내용은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기타 정보의 교환은 일체 금합니다. 또, 해당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담당자 등이 동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2. 사업자단체 참여

- (1) 사업자단체 참여는, 해당 단체의 활동 목적 및 활동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독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단체로 제한합니다. 경쟁사업자 간의 비공식적인 조직 및 회의에 관여하는 것은 일체 금합니다.
- (2) 사업자단체에서의 논의 내용은, 해당 사업자단체의 활동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며, 기타 정보 교환은 일체 금합니다. 또, 사업자단체의 활동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담당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3) 사업자단체에서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담합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혹은 공공의 목적성이 있는 내용으로 제한합니다.

- 환경 및 안전 등 사회공공적인 목적에 따른 공통 규격 및 기준 설정
- 업계 지위 향상, 수요 촉진, 올바른 사용 방법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보급 활동
- 산업 활동의 실적 파악 및 공개를 위한 지난 사업 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표

단, 현재 및 향후의 판매·생산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일은 일체 금함

-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및 희망사항 표명

- ② 경쟁사업자와 회의를 하거나 사업자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③ 협의 및 회의의 내용,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④ 경쟁사업자와 친목을 도모하는 이벤트(회식, 친목회, 친목 여행, 골프 등)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②, ③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록④ AGC그룹 독금법 준수 가이드라인**

- (1) 경쟁사업자와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 의안, 출석예정자 등을 상사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낙을 얻으십시오. 상사는, 기준①에 비추어 필요성이 없거나 독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조정 전후에 경쟁사업자와 접촉하는 일은, 그 목적과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금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법무실로 상담 바랍니다.
- (2) 자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사전에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 이외의 내용은 논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업자단체 회의의 경우, 주최자에게 개요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 (3) 협의 내용 기록은, 훗날 담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 참석자, 주제를 기록하고, 폐기 및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담합 의혹을 부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구두로 협의하지 말고, FAX나 메일 등 서면으로 주고 받고, 이에 관한 기록도 가능한 보관하십시오. 위법성이 의심되는 논의가 진행됐다면, 반드시 그 기록의 사본을 법무실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4) 회의 종료 후 경쟁사업자 간에 간담회 및 망년회, 골프 대회, 친목 여행 등의 이벤트를 열거나 이에 참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담합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필요성 및 위험성, 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참가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상사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하며, 단순한 이벤트라 하더라도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5) 법무실에서는 향후 이러한 기록의 보관 상황 및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⑤ 담합 의심 행위에 의도치 않게 참여하게 되었다면, 명확하게, 그리고 증거가 남는 형태로 담합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1) 회의에서 가격, 생산·판매의 수량 및 비율 등에 관한 정보가 나온 경우, 당사는 절대로 이에 참가·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발언하고, 이를 회의록에 남기도록 요구한 다음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법무실로 보고 및 상담해야 합니다.
- (2) 가격 및 입찰 정보 등을 FAX,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법무실로 연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은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문서 또는 구두로 항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담합은 구두 및 암묵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합 결정 정보를 전달받고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에 해당합니다.
  -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호한 태도나 자세를 유지한다면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들어가며

사회의 공기(公器)인 회사가 향후에도 존속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보고”는 회계 부문의 업무로 여겨지지만, 회계 부문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은, 의도야 어찌되었든, 결코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적절한 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 2. 부정 거래 등 금지

다음과 같은 “사실과 다른 보고”는 “부정 거래” 등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 ① 매입·판매·재고 등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거래하거나 장표류를 작성하는 행위  
반대로, 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실제 거래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
- ② 회사 규정에 따른 성실한 업무 집행 및 예산 관리를 하지 않고, 실체와 다른 장표류를 작성하는 행위

## 3. 그룹 회계 기준 준수

AGC그룹은 “AGC그룹 회계 방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매입 계상, 재고·설비 등 자산 계상, 원가 및 손익 계산 등을 이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원칙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거래 등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회계 부문으로 문의하십시오.

## 4. “부정 거래 등 금지”의 구체적 유의 사항 (개관)

### (1) 매출액 관련 유의점

#### ① 매출액에 포함되는 거래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거래여야 합니다.

부록⑤ 「부정 거래 등의 금지」 가이드라인(아시아)

계 정 과 목	대 상 수 익
상품 · 제품매출액	상품 · 제품 등 물품의 판매 활동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는 경우, 해당 판매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그에 따른 용역 제공 포함). 또한, 매출 대상 품목을 외주 가공하여 그 가공 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외주 가공 거래”도 상품 · 제품매출액에 포함된다.
공사 수익	플랜트 · 건물 · 도로 및 기타 건설공사를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는 경우, 해당 영업 활동에서 얻는 수익. 플랜트 건설 거래 관련 매출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계정 과목을 이용한다. • 설비 및 장비 판매 ..... 상품 · 제품매출액 • 플랜트 건설 공사 ..... 공사수익 • 설계 및 기술 정보 제공 ..... 기술용역제공수익
기술용역제공수익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노하우 · 로열티 · 설계 및 기타 기술정보의 제공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는 경우, 해당 영업 활동에서 얻는 수익

② 매출액 계상 시기

매출액 계상 기준은 “AGC그룹 회계 방침”의 “수익 및 비용” 항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계 부문으로 문의 바랍니다.

거래 형태 구분
1. 자사 제품, 매입 상품, 플랜트 기재의 일본 내 매출 2. 위 항목의 수출 매출 3. 하청 공사, 플랜트 건설 4. 자사의 물류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매입 상품의 매출 5. 노하우, 공업소유권 등의 매출 6. 로열티 매출 7. 설계료 매출 8. 용역제공료 매출

(특히 주의할 점)

○ 기말월 근처의 매출 계상에 대해

사내 예산 관리 및 이익 목표를 우선시하여, 매출 계상 시기를 벗어나 처리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잠정 단가 처리에 대해

잠정 단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말까지 단가를 확정해야 한다.

잠정 단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법은 회계부문으로 확인할 것.

(2) 매입 등 거래에 관한 유의점

① 매입 등의 계상 기준

물품의 구매	원칙: 물품 검수일 잠정 단가 처리: 원자재, 기재 등을 잠정 단가로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말까지 단가를 확정해야 한다. 잠정 단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응 방법은 회계부문으로 확인 할 것.
서비스의 수수	원칙: 제공받은 서비스의 검수 일

② 금지사항

부외자금 금지	매입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와 대차 관계를 맺고 대금을 입금하는 등, 부외 자금을 만드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사전 계상” “지연 계상”	사내 예산 관리 및 비용·이익 목표를 우선시하여 계상 기준에서 벗어난 처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 조사비 사전 검수 위탁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기말월에 앞당겨 검수하고 계상·지불하는 행위 • 공사의 사전 검수 발주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하고 계상·지불하는 행위 • 당기 공사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하고, 차기 이후의 다른 공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전표 작성 관련 유의점

전표 작성 내용은, 구입물품·공사·서비스 등의 거래 사실이 적절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사실을 반영하여 올바른 지출 명목 및 항목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비용 항목 및 공사 건명 대체 등에 의한 “예산 유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지 사항)

- 설비 투자 공사 건명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본래 지출 항목 및 예산 부호와 다른 계상을 하는 행위
- 플랜트 등의 공사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는 행위
- 본래 자사가 직접 지출해야 할 교제비를 거래처에서 지원받고, 그 비용을 제품 구입 대금 특별 정산 등의 형태로 지불하는 등, 실태를 왜곡하여 처리하는 행위

부록⑤ 「부정 거래 등의 금지」 가이드라인(아시아)

- (4) 유가물(철제 및 종이류 폐기물 등) 매각 관련 유의점  
유가물의 매각은, 그 자체를 수입으로 취급하며, 개별 거래인 구입품 등의 매입으로 상쇄해서는 안됩니다.
  
- (5) 재고 관리 자산의 재고 관련 유의점  
재고 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책임자에게 현장 재고 조사 및 재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불표와 잔액을 비교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 (6) 월별 원가 계산 및 손익 계산 관련 유의점
  - 월별 원가 계산 및 손익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인 입고 수량, 중간제품 수량, 공정 비용 분배 기준 수량, 매출 수량 등에 대해, 소관 부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 계산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수량으로 원가와 손익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원단위 및 수효율도 실제 데이터를 반영해야 합니다.
  
- (7) 소비세, 관세, 인지세 등에 대해  
※매상·매입의 각 거래에 부과하는 소비세·관세 등의 법률·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